KOSHA GUIDE W - 8 - 2021

화학물질의 급성흡입독성시험 기술지침

2021. 10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성배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용순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은상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중래

#### ○ 제·개정 경과

- 2011년 11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5년 5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21년 09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# ○ 관련규격 및 자료

- OECD Guidelines 403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(Acute inhalation toxicity)
-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급성흡입독성 표준작업지침서 (SOP: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)중 INH/001~006항목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 및 관리), 제 108조(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, 제143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
- 고용노동부 예규 제166호(화학물질 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)
-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-46호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30호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

#### 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 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0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화학물질의 급성흡입독성시험 기술지침

# 1. 목 적

이 시험지침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-46호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 별표 제5장(건강영향 시험분야) 제2항(급성흡입독성시험) 방법으로 흡입경로로 흡입 가능한 물질(가스, 휘발성 물질 또는 입자상물질)의 단기간 노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해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었다. 이 시험지침으로 얻은 결과는 시험 물질의 분류와 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이용되고 아급성흡입독성과 기타 독성을 행하는 경우 용량을 설정하는데 이용될수 있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시험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-46호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 별표 제5장(건강영향 시험분야) 제2항 급성 흡입독성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법으로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급성흡입독성"이라 함은 흡입 가능한 물질을 단기간(24시간이내)에 1회 흡입노출 시켰을 때 시험 물질에 의해 나타나는 악영향(Adverse effects)을 말한다.
  - (나) "LC<sub>50</sub> (Median lethal concentration)"이라 함은 시험물질에 노출 후 일정시 간 또는 노출 중에 시험동물의 반수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를 말 한다. LC<sub>50</sub>의 단위는 증기(Vapor) 및 분진(Dust)/연무(Mist)일 경우 공기의 표준부피당 시험물질의 무게(mg/ℓ)로 가스일 경우 ppm으로 표시한다.

W - 8 - 2021

- (다) "빈사 상태(Moribund state)"라 함은 시험물질의 독성에 의하여 시험동물이 죽어가는 상태 또는 생존할 가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.
- (라) "GHS(Globally Harmonized Classification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)"이라 함은 국제적으로 조화된 화학물질의 분류 시스템을 말한다.
- (마) "GLP(Good Laboratory Practice: 우수실험실 운영기준)"라 함은 시험기 관에서 행해지는 시험이 계획, 실행, 점검, 기록, 보고되는 과정 및 그 조 건들과 관련된 총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(바) "운영책임자"란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 진 자를 말한다.
- (사) "시험책임자"란 운영책임자로부터 해당시험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위임 받은 자로 해당시험의 계획, 시행, 보고서 작성 등 시험전반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.
- (아) "시험담당자"란 해당시험의 일부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시험계획서에 의하여 시험 책임자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(자) "동물관리책임자"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실무, 동물의 도입, 순화, 관리, 폐기 등 시험에 관련된 동물관리 일체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.
- (차) "주령"이란 실험동물의 모체로부터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이 경과되는 날을 1주령이라 한다.
- (카) "순화"란 실험동물은 사육환경 변화시 생체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동물의 이동이나 환경조건 변화시 해당 시험장소에서 충분히 적응되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(파) "SPF(Specific Pathogen Free: 특정병원체 부재동물)란 특별히 지정된 미생물과 기생충을 함유하지 않는 동물로 일반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함유하지 않는 동물을 말한다.

W - 8 - 2021

- (하) "진전"이라 함은 고정된 상태에 있을 때 몸의 한 부분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'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-46호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'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4. 시험계획서 작성

#### 4.1 목적

급성흡입독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.

#### 4.2 시험계획서 작성 시기

- (1) 시험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시험책임자로 지정되면 시험물질의 조제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.
- (2) 시험책임자는 시험계획서가 운영책임자에 의하여 승인되면,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동물구입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.

#### 4.3 시험계획서 작성방법

시험계획서에는 표지 및 시험개요, 시험세부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.

# (1) 표지 및 시험개요

표지 및 시험개요에는 시험번호, 시험명, 작성일, 시험일정, 의뢰기관, 시험기관명, 그리고 각 시험부문별 확인 및 승인사항이 나타나도록 한다.

#### (2) 시험세부계획

KOSHA GUIDE W - 8 - 2021

시험세부계획은 아래 <표1>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.

<표 1> 시험세부 계획 내용

순 서	내 용			
1	시험목적			
2	적용된 시험방법 (가능할 경우 OECD 가이드라인 지정)			
3	사용된 시험계			
4	동물사육조건 (사료 및 음용수 포함)			
5	시험물질 및 대조물질			
6	노출방법			
7	시험군			
8	시험실시 예정			
9	시험항목			
10	통계처리			
11	보관자료 및 신뢰성 보증			
12	참고문헌			
13	첨부자료			

# 5. 독성시험 수행

시험책임자는 작성된 시험계획서에 따라 우수실험실 운영기준(Good Laboratory Practice; GLP) 시설 내에서 다음과 같이 독성시험을 수행한다.

# 5.1 시험의 준비

#### 5.1.1 예비사항

- (1) 건강하게 성숙한 동물을 시험 전 5일 이상 시험환경에 순화시킨 후 시험시 작 전에 동물을 무작위로 나눈다.
- (2) 공기 중에 적당한 시험물질 농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당한 용매를 가해도 좋다.

W - 8 - 2021

#### 5.1.2 장 치

- (1) 19%이상 산소농도와 균일하게 분포되는 노출환경을 확보하며 시간당 12~ 15회의 환기가 유지되도록 고안된 적절한 흡입장치에서 시험한다.
- (2) 흡입 시험 장치는 코 전용(Nose only) 또는 전신(Whole body) 노출 챔버가 있으며 목적에 따라 선택한다. 일반적으로 코 전용이 기본 모드이나 전신노 출 챔버를 사용하면 더 좋은 연구를 얻을 수 있다.
- (3) 챔버내는 약간의 음압으로 유지시켜 시험물질이 바깥쪽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.
- (4) 챔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동물의 밀집을 최소한으로 하되, 시험물질의 노출이 최대한으로 되도록 고려한다.
- (5) 챔버내 환경의 안정성을 확실하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동물의 총용적을 챔버용적의 5% 이내로 해야 챔버내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있다.
- (6) 다른 방법으로서 입·피부노출, 두부노출, 전신개별 챔버노출법 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.
- (7) 적절한 농도분석 모니터링 장치를 부착시킨 흡입장치를 사용한다.
- (8) 장치내 전체의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공기의 유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.

#### 5.1.3 동물입수 준비

- (1) 시험책임자는 동물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동물실을 결정한다.
- (2) 동물관리책임자는 사용할 동물실의 환경, 청소 소독, 설비를 점검하고 이상 이 없도록 준비한다.

#### W - 8 - 2021

- (3) 사용할 기자재가 완전히 갖추어 진 것을 확인한다. 개체식별카드는 미리 작성하여 사육상자 전면에 부착한다.
- (4) 동물실 사용기록지를 작성하여 사용할 동물실의 전면에 부착한다.

#### 5.1.4 시험동물

- (1) 동물을 사용하는 시험 책임자는 동물관리실에 시험번호, 시험물질, 동물종 (계통), 주령, 동물수, 도입시 동물체중 공급업자 등을 기입하여 동물구입을 신청한다.
- (2) 시험동물은 각종 독성시험에서 약물반응 및 자연발생 병변 등 기초 자료가 풍부한 특정병원체 부재(Specific Pathogen Free; SPF) 동물을 사용한다.
- (3) 시험책임자는 시험계획을 세우고 실험동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할 동물수를 정한다.
- (4) 노출 당일에 동물은 8주에서 12주 사이의 나이인 청장년기, 체중은 노출하 기전의 같은 나이의 동물로 각 성별에 따른 체중의 ±20%이내의 것을 사용 한다.
- (5) 암컷은 출산의 경험이 없거나 임신하지 않은 동물을 사용한다.
- (6) 동물은 새로운 환경으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시험 시작하기 전 최소한 5일 이상 동물실험실 또는 챔버내에서 순화 시킨다. 코 전용시험을 할 경우는 구속튜브에 익숙해지도록 장치 적응작업을 수행한다.
- (7) 순화 후 건강한 동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군분리 한다.

#### 5.1.5 사육조건

- (1) 시험동물실의 온도는 22±3℃, 상대습도는 30~70%를 유지되도록 한다.
- (2) 조명은 매 12시간 간격으로 점멸한다.

W - 8 - 2021

- (3) 사료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것을 사용하며 음용수는 자유로이 섭취 가능하도록 한다.
- (4) 동물은 성별 군으로 사육해야 하며, 케이지당 동물수는 개개의 동물을 충분 히 관찰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.

#### 5.1.6 시험물질

- (1) 사용할 시험물질의 물리적 성상은 가스, 증기, 연무 또는 분진 형태이며 물질에 따라 맞는 발생기(유기용제의 경우 유기용제 발생장치, 연무는 연무발생장치, 그리고 분진의 경우는 분진발생장치 등)를 선택하여 사용한다.
- (2) 부식 또는 심한 통증 또는 고통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의 시험은 실시하지 않으며,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할 수 있다.
- (3) 흡입시험은 자료의 단위가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, 시험환경이 거의 기체에 가까운 증기를 포함한 가스인 경우에는 기체 (ppm), 액체이면서 비점이 비교적 낮은 물질은 증기(mg/l), 기타 물질은 분진 및 연무 mg/l)의 수치를 이용하여 분류한다.
  - ☞ ppm 단위와 mg/ℓ 단위의 환산 (1기압, 25℃)

 $(ppm) = [(mg/L) \times 24.45 \times 10^{3}] / 분자량$  $(mg/\ell) = [(ppm) \times 분자량 \times 10^{-3}] / 24.45$ 

#### (4) 가스 또는 증기

- (가) 노출하는 시험물질의 농도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한다.
- (나) 챔버내 농도는 자동으로 실시간 농도측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 노출시간 동안 호흡기 영역 내에서 최소 3회 포집을 하여 노출하는 농도를 분석한다.

#### W - 8 - 2021

- (다) 가스와 증기 농도는 ±10%이내 이어야 한다.
- (5) 연무 또는 분진
- (가) 입자의 크기 조정은 모든 에어로졸 및 에어로졸 형태로 응축한 증기로 수행한다.
- (나) 에어로졸의 입자 크기 분포는 공기 역학적 입자 크기측정계기 같은 엔더 슨 샘플러(Anderson sampler), 캐스케이드 임팩터(Cascade impactor) 또 는 다른 계기를 사용하여 4시간 노출시 최소 두 번 측정한다.
- (다) 위의 계기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, 다른 계기도 사용할 수 있다. 중량 필터 또는 임핀저(Impinger)/가스 버블러(Gas bubbler)와 같은 2차 장치는 1차 계기의 수집 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1차 계기와 병행하여 사용한다.
- (라) 입자 크기 분석에 의해 얻어진 질량 농도는 필터를 분석하여 얻어진 질량 농도는 ±20%이내에 있어야 한다.
- (마) 호흡기의 주변 지역의 노출에 대한 허용하려면 에어로졸은 질량 평균 공기 역학적 직경 (Mass Median Aerodynamic Diameter; MMAD)은 1~4  $\mu$ m범위이고 기하 표준편차는  $1.5\sim3.0$ 의 범위이어야 한다.
- (바) 노출되는 실제 농도는 흡입 챔버에 있는 동물들의 호흡 영역에서 측정한 농도이다. 특정 방법(직접 샘플링, 흡착 또는 화학적 반응 방법 및 그 이후의 분석 특성화 등) 또는 중량 필터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농도를 측정한다.
- (사) 중량 분석은 단일 성분 분진 또는 연무 에어로졸의 경우에 가능하다.
- (아) 다중 성분 분진 에어로졸 농도도 중량 분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. 그러나 공기 중 시료의 조성이 시작 물질과 다른 조성이 되어 버리면 사용할수 없다.

W - 8 - 2021

(자) 분진 또는 연무 에어로졸의 편차는 ±20%를 유지하여야 한다.

#### 5.1.7 챔버내 기류

- (1) 시험담당자는 챔버를 통하는 공기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. 노출을 하는 동안 챔버내 유량은 최소한 매시간 마다 기록한다.
- (2) 코 전용 챔버의 노출 시스템을 통하여 흐르는 시험물질이 역으로 흘러 재호흡되지 않도록 한다.
- (3) 산소 농도는 최소 19%이어야 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1%를 넘지 않도록 한다. 만약 이 경우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면 믿을만 한 기준(시간당 환기량 횟수 12회 이상)이 있어야한다.
- (4) 코 전용과 전신노출 챔버내의 온도는 22±3℃로 유지한다.
- (5) 동물 호흡 영역에서 상대 습도를 모니터링하고 노출되는 4시간동안 적어도 세 번은 측정되어야 한다. 상대 습도는 30~70%의 범위에서 유지되어야하 지만 물이 포함된 미스트 시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## 5.2 시험 방법

#### 5.2.1 워리

- (1) 몇 개의 군으로 나눈 시험동물에 1군 1농도로 시험 물질을 일정기간 노출 하는데, 이때 노출환경 중에서 적절하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용매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용매 노출군을 설정한다.
- (2) 시험담당자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 및 사망에 대한 관찰을 한다.
- (3) 시험 중에 사망한 동물은 부검하고 시험 종료시까지 생존한 동물은 도살하여 부검한다.

W - 8 - 2021

#### 5.2.2 시험물질투여

- (1) 시험담당자는 노출 직전에 시험동물의 체중을 측정하고, 지정한 장치에서 시험농도로 4시간 노출한다.
- (2) 시험온도는 22±3℃로 유지해야 하고, 상대습도는 30~70%로 한다. 에어로 졸 시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(3) 노출 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으며, 음용수는 24시간 자유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나 코 전용 시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## 5.2.3 한계 시험

- (1) 한계시험은 해당 시험물질 또는 시험물질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거나 무독성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행한다.
- (2) 한계시험은 한 가지 농도로 수행하며, 가스의 경우 20,000 ppm, 증기의 경우 20 mg/ℓ, 분진 또는 미스트의 경우 5 mg/ℓ에서 4시간 노출한다.
- (3) 시험물질의 투여는 암·수 6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각각 3마리씩 2단계로 나눠서 수행한다.
- (가) 1단계에서 투여한 3마리에서 관찰되는 사망(또는 빈사상태) 정도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.
- (나) 사망(또는 빈사상태) 개체수가 0~1마리의 경우는 2단계에서 3마리에 대하여 동일 농도로 재차 투여하며, 이때 전체 6마리 중 사망(또는 빈사상태) 동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미분류(Unclassified) 등급으로 분류하며, 1~2마리가 사망(또는 빈사상태)할 경우 시험물질을 GHS 구분 (Category) 4 등급으로 분류한다(표 2참조).
- (다) 다른 한편으로 1단계와 2단계에서 사망(또는 빈사상태) 개체수가 3마리이 상 발생하는 경우, 이보다 저농도에서 본시험을 수행한다.

W - 8 - 2021

- (4) 만약 시험물질의 물리적·화학적 성상 때문에 위의 농도노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얻어낼 수 있는 최고농도로 시험한다.
- (5) 시험물질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.

#### 5.2.4 본시험

(1) 한계농도 이하에서 화학물질의 분류,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, 그리고 GHS분류기준에 근거한 아래 <표 2>의 농도로 노출한다.

<표 2> 화학물질의 분류,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

성상	구분 1	구분 2	구분 3	구분 4
가스 (ppm V)	ATE≤100	100 <ate≤500< td=""><td>500<ate 2500<="" \le="" td=""><td>2500<ate 20000<="" <="" td=""></ate></td></ate></td></ate≤500<>	500 <ate 2500<="" \le="" td=""><td>2500<ate 20000<="" <="" td=""></ate></td></ate>	2500 <ate 20000<="" <="" td=""></ate>
증기 (mg/l)	ATE≤0.5	0.5 <ate 2.0<="" \le="" td=""><td>2.0<ate 10<="" \le="" td=""><td>10.0<ate 20.0<="" \le="" td=""></ate></td></ate></td></ate>	2.0 <ate 10<="" \le="" td=""><td>10.0<ate 20.0<="" \le="" td=""></ate></td></ate>	10.0 <ate 20.0<="" \le="" td=""></ate>
분진/미스트 (mg/l)	ATE≤0.05	0.05 <ate 0.5<="" <="" td=""><td>0.5<ate 1.0<="" \le="" td=""><td>1.0<ate≤5.0< td=""></ate≤5.0<></td></ate></td></ate>	0.5 <ate 1.0<="" \le="" td=""><td>1.0<ate≤5.0< td=""></ate≤5.0<></td></ate>	1.0 <ate≤5.0< td=""></ate≤5.0<>

- st ATE : 급성흡입독성 추정치.  $LC_{50}$  또는 추정값
- (2) 각 시험용량에 대해 암·수 5마리씩을 시험동물로 사용한다.
- (3) 시험 시작은 상기 표에 제시된 용량 가운데서 독성 증상(사망 또는 빈사상 태)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용량 하나를 선택하여 3마리씩 노출을 하고, 이때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다른 농도에서 시험을 계속 진행한다.
- (4) 시험물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의 독성정보가 없는 경우, 가스 2,500 ppm, 증기 10 mg/l, 분진/미스트 1.0 mg/l 용량으로 시험을 시작한다.

#### 5.2.5 관찰기간

(1) 관찰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간하며, 독성 반응과 증상출현율의 비율, 그리고 회복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W - 8 - 2021

(2) 관찰은 노출시작 후부터 종료 2시간까지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수시로 관찰을 하고, 이후 14일까지는 1일 1회 이상 관찰한다.

## 5.2.6 이화학적 측정항목

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측정 또는 모니터링을 행한다.

- (1) 공기의 유량은 연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.
- (2) 시험물질의 농도는 동물의 호흡구역 내에서 측정하며, 노출중의 농도는 일 정하게 유지한다. 분진이나 에어로졸의 경우에는 이 조건범위의 변동을 유 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보다 넓은 범위가 인정된다.
- (3) 발생장치(Generating system)의 작동에 있어서는 에어로졸 농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자크기의 분석을 실시하며, 노출 중 입도분포의 항상성 측정이 필요하면 반복 분석한다.
- (4) 온도와 습도는 연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.

#### 5.2.7 임상관찰

- (1) 시험담당자는 노출 중 및 노출 후의 관찰을 행하여 기록한다. 각각의 동물에 관하여 개별기록을 하여야 한다. 매일 1회 이상 주의 깊게 임상적 관찰을 수행한다.
- (2) 사망동물은 발견한 즉시 부검 또는 냉장보존하며, 쇠약 또는 빈사상태의 동물은 격리 또는 도살 등의 처치를 한다.
- (3) 관찰은 피부, 눈, 점막, 호흡계, 순환계, 자율신경 및 중추신경계, 전신운동과 행동 패턴의 변화, 진전, 경련, 유연, 설사, 졸림, 수면 및 혼수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(4) 사망시간은 가능한 한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. 동물의 개별체중은 노출 후 매주 1회와 사망시에 측정한다.

W - 8 - 2021

(5) 1일 이상 생존한 경우에는 체중변화를 계산하고 기록하고, 시험 종료시 생존한 동물은 체중을 측정한 후 도살 처분한다.

#### 5.2.8 부검

- (1) 일반적으로 급성흡입시험일 경우 병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, 시험책임자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병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(2) 동물의 부검은 특히 기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.
- (3) 다른 장기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독성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도 조사하고 모든 육안적 병리변화는 기록하여야 한다.
- (4) 표적 기관의 현미경적 검사는 필요시 실시한다.

# 6. 독성시험 결과 및 보고

## 6.1 결과의 처리

- (1) 각 군마다 시험개시시의 동물수, 노출농도, 개별동물의 사망시간, 독성징후를 나타낸 동물수, 독성변화 및 부검소견을 표로 정리한다.
- (2)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변경된 OECD가이드라인과 유해성 구분을 위하여 과반수 치사량은 구하지 않고 사망, 빈사상태 동물수로 급성흡입 독성 등급만 결정한다.

#### 6.2 시험결과의 보고

시험결과의 보고서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.

(1)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

W - 8 - 2021

- (2)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 성명
- (3) 시험동물: 종, 시험동물의 수, 연령, 공급원, 사육조건, 각 개체의 사육 조건
- (4) 시험물질: 물질명과 CAS 번호, 물리적 특성 및 순도, 시험과 관련된 물리 화학적 특성, 시험물질의 안정성
- (5) 시험조건
- (가) 시험기간, 노출농도 수준, 사료 및 음용수 공급 시기 등
- (나) 형태, 크기, 공기원, 에어로졸 및 입자발생계, 환경공기조정의 방법, 배기 의 처리방법
- (다) 챔버내 동물 수용방법, 노출장치의 기록, 온도, 습도, 에어로졸 입자의 농 도와 크기
- (6) 노출성적

평균치와 변동치(표준편차)를 명기하고 노출성적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기록한다.

- (가) 흡입장치의 공기 유량
- (나) 공기의 온도와 습도
- (다) 이론치 농도(흡입장치 내에 투여된 시험물질의 총량을 공기량으로 나는 값)
- (라) 호흡구역에서의 실측농도
- (마) 입자크기의 중앙치(입경분포): 분진 또는 미스트 시험의 경우 실시

W - 8 - 2021

- (7) 동물에 관한 성적
- (가) 사용된 동물종 및 계통
- (나) 성별 및 노출농도 군마다의 성적표(사망동물 수, 독성징후를 나타낸 동물의 수, 노출동물 수, 피부, 눈, 점막, 호흡계, 순환계, 자율신경 및 중추신경계, 전신운동과 행동 패턴의 변화, 진전, 경련, 유연, 설사, 졸림, 수면및 혼수상태 등)
- (다) 노출기간 중 또는 노출후의 사망시간
- (라) 용량-사망곡선과 기울기(계산방법에 따른 가능한 경우)
- (마) 도살기준 및 근거
- (바) 관찰되었던 장해와 이상을 포함하는 부검 결과
- (사) 병리학적 소견 등의 결과 해석

# 지침 개정 이력

- □ 개정일 : 2021. 10.
  -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중래
  - 개정사유 :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 폐지 등 개정
  - 주요 개정내용
    -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
    - 고용노동부 고시(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, 고용노 동부고시 제2020-57호) 폐지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 인용